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던 아동의 위기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의 발굴을 강화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질병관리청장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